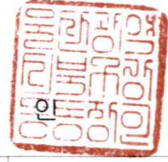
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9월 02일

강동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희	이 *희 1950-03-12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(정자동)	직권말소 2022-09-02
김 *연	김 *연 1973-05-26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(정자동)	직권말소 2022-09-02